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510호
- 다. 제출일자 : 2021. 5. 27.
- 라.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안 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A)-(B)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20	786,692	818,883	812,075	6,808			99.2
2019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99.1
2018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98.5

- 세입은 당초 예산액이 7억 8,669만원으로 8억 1,888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8억 1,207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2%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81만원이 발생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2,432,708				18,000		2,432,708	2,153,251		279,457 (11.5%)
2019	2,466,919	12,430	56,621	7,197			2,535,970	2,114,417		421,553 (16.7%)
2018	2,069,801	5,300					2,075,101	1,898,352	12,430	164,319 (7.9%)

- 예산현액은 24억 3,271만원이며, 이 중 21억 5,32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2억 7,946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 : 품질시험소 건설자재품질시험 시험연구비에서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800만원을 전용하여 아스콘 시험시약(삼염화에틸렌) 대체시약(1-브로모프로판) 구매에 사용함.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7,946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1.5%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응 율 (%)	비 고
2020	2,432,708	279,457	11.5%	
2019	2,535,970	421,553	16%	
2018	2,075,101	164,319	7.9%	

〈 발생원인별 내역 〉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사유 미발생 : 23백만원
 - 건설기술 심의회 운영 4백만원
 - 건설기술 향상교육 및 우수건설관계자 시상 19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예산절감 : 없음
- (기술심사담당관) 집행잔액 : 60백만원
 - 건설 기술심의회 운영 7백만원
 -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지원 13백만원
 - 기본경비 22백만원
 -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17백만원
 - 그 밖의 사항들 1백만원
- (기술심사담당관) 낙찰차액 : 22백만원
 -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4백만원
 - 대심도 지하개발에 따른 영향 연구 18백만원
- (품질시험소) 예산절감 : 없음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1억 74백만원
 - 건설자재 품질시험 36.8백만원
 -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51.7백만원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 30백만원
 - 기본 경비 55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 없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1,970,973						1,970,973	1,680,687		290,286 (14.7%)
2019	-									
2018	-									

- 예산현액은 19억 7,097만원이며, 이 중 16억 8,06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인 2억 9,028만원이 발생함.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 예산의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없음.
- 예산의 이체는 없음.
- 예산의 변경사용 없음

4)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없음.

5)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6)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없음

7)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억 9,028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14.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율 (%)	비 고
2020년	1,970,973	290,286	14.7%	

< 발생원인별 내역 >

- (품질시험소) 예산절감 : 없음
- (품질시험소) 집행잔액 : 2억 90백만원
 -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2억 90백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율(% (B/A))
					결손처분	다음연도이월액	
2020년	786,692	818,883	812,075	6,808	0	0	99.2
2019년	813,994	886,097	878,056	5,784	2,256	0	99.1
2018년	811,493	842,278	829,758	11,970	550	0	98.5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7억 8,669만원이었으나 실제 8억 1,888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이 중 수납액은 8억 1,20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2%이며, 미수납액은 681만원이 발생하였음.

나) 세수추계(결산서 p.14~17)

-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8억 1,888만원은 예산현액 7억 8,669만원의 104.1%에 해당하며, 이 중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크게 발생한 주요 항목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사 유
기술심사담당관					
그외수입	12,000	5,520	5,520	△6,480	○공사, 공단 심의 요청 건수 변동
과징금	-	30,000	30,000	30,000	○영업정지 업체 과징금 같음
과태료	35,000	40,065	40,064	5,065	○위반업체 기관통보 건수 증가
지난연도 수입	-	6,443	0	6,443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품질시험소					
기타사용료	4,326	5,192	4,892	866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이 용 혼잡도 낮추기 대책으로 자가용 이 용이 증가하여 주차수입 증가
증지수입	733,016	728,872	728,872	△4,144	○품질시험 수수료는 초과달성하였으나,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신청 건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소
사업수입	-	268	268	268	○기타사용료(주차요금)를 주차사업비목으로 오류 등록
기타이자수입	-	322	322	322	○ 사업자명의 통장 예금이자 수입

- 먼저 기술심사담당관 세입 항목 중,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가 크게 나타난 주요 항목들을 살펴보면,
 - ‘그외수입’의 경우 건설기술심의 수수료에 해당하며 예산액 1,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552만원(46%)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는 당해년도에 공사, 공단 등으로부터 정밀 안전, 설계 심의 등의 요청 건이 당초 예측(12건→6건)보다 감소하였기 때문임.

- 동 항목의 세수 추계는 최근 3년간 평균수수료에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추계하였는데, 이는 심의 요청건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데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됨.

○ ‘과징금’¹⁾의 경우 건설기술용역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징수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3,000만원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²⁾에 따른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50일 이내에 보완하지 못하여 같은법 제31조³⁾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법령에 따라 3개월의 영업정지⁴⁾

1) ‘과징금’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32(과징금)에 따른 부과금으로
- 「건설기술진흥법」 제32조(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6. 생략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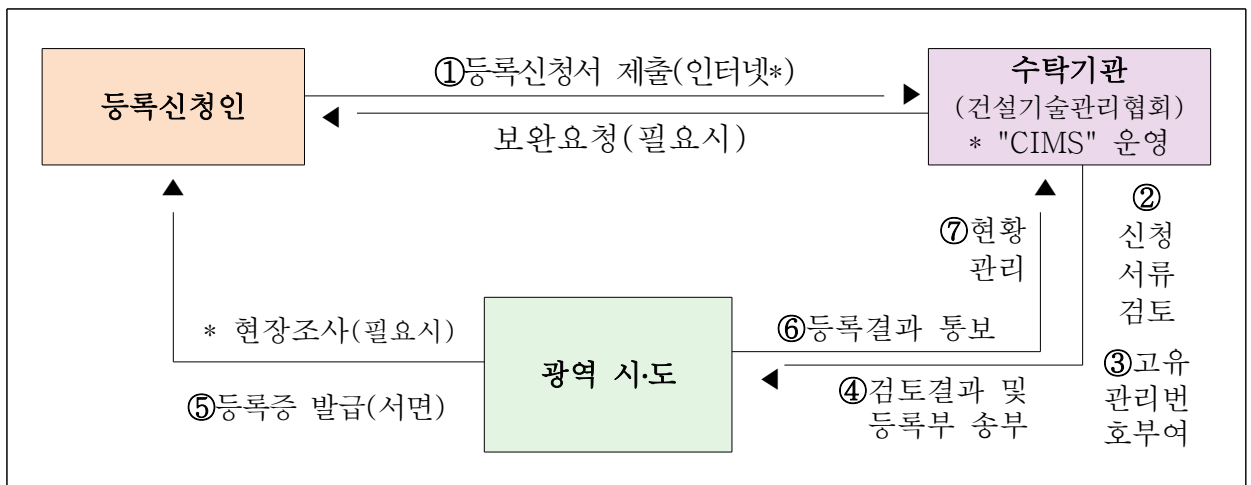
4) [별표6]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처분 및 과징금 산정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차		2차		3차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7호	영업 정지 3개월	3천 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천 만원	영업 정지 12 개월	1억 2천 만원

를 부과한 것으로 해당업체가 영업정지와 3,000만원의 과징금 중 과징금 납부를 택함으로 인해 과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 참고로, 건설기술용역 등록업체의 등록절차를 살펴보면,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만족여부를 위탁기관인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판단하여 보완사항을 해당업체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기술심사담당관에 통보하고 있음.

[표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절차



[표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연도	처분내용		
	영업정지	업무정지	과징금
2016년	2	1	-
2017년	1	-	-
2018년	2	-	-
2019년	3	-	-
2020년	7	-	1

- ‘과태료’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예산액 3,5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4,006만원으로 50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표 4] 건설기술용역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예산액 및 징수결정액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b)-(a)
2020년	35,000	40,065	40,065	50,065
2019년	35,000	20,325	20,325	-14,675
2018년	34,250	41,112	36,070	6,862

- 이는 협회로부터 위반 건수를 통보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어려워 최근 3년간(‘17년-‘19년) 평균 부과건수를 반영하여 세입추계 하였으나 예측보다 위반 통보 건수가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됨.

[표 5] 과태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 | |
|--|
| ① ‘17~‘19년도 변경신고 지연과태료 평균 부과건수 100건 × 250천원 = 25,000천원 |
| ②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과태료 최소부과 건수 1건 × 10,000천원 = 10,000천원 |
| ① + ② = 35,000천원 |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로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실제로는 644만원이 징수 결정되었는데,

-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⁵⁾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 퇴사자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3개 업체에 대해 13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그 해에 징수하지 못하고 누적된 것임.
 -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13건의 과태료 중 2개 업체의 9건(436만원)은 체납분 징수 노력에 의해 수납완료 하였으나, 1개 업체의 4건(208만원)은 체납분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연례적으로 누적되어 오는 장기체납액인 관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수 추계가 쉽지 않은 점은 있으나,
 -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예산액을 전혀 잡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의지가 없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체납에 대한 특단의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 세입 항목 중 정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사용료’는 품질시험소 부설주차장과 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 받는 수입으로, 예산액 43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519만원으로 8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5)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표 6] 기타사용료 세수추계 산출근거

<p>① 2020년 주차요금 세수추계 : 368만원 산출액 : 3,627천원(2020년 전망액) × 1.016 = 3,685천원 산출내역 - 정기주차 : 295,200원×12월×1.016 = 3,599,078원 - 일일주차 : 7,100원×12월×1.016 = 86,563원</p> <p>② 청사 사용료 수입(태양열발전시설 사용료) : 64만원 [공시지가(2,755,000원)×건축부지면적(1,278.8㎡)×옥상지수(0.0182)] ×요율(10/1000) = 640,500원</p>
--

-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여 품질시험소의 주차장수입이 증가(368만원→456만원)한 것에 따른 것임.

[표 7] 부설주차장 수입 부과내역

(단위 : 원)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주차 요금	566,240	-	338,300	360,200	380,500	373,100	428,400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04,700	407,800	403,700	418,000	476,600	4,557,540	

- ‘증지수입’은 품질관리 및 시험수수료, 택시미터 검정수수료, 각종 계량기 수수료로 예산액 7억 3,301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7억 2,887만원으로 41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 이는 2019년 택시요금 상승에 따른 일제검사 실시로 2020년 검사건수가 감소한 것과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의뢰 대수가 당초 예상 보다 감소한 것에 따른 것임.

[표 8] 최근 3년간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사신청 건수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택시미터검정	주행검사	14,194	41,773	13,178
	정차검사	65	374	41
계량기 검정		153	154	129

- ‘사업수입’은 예산액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 27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예산담당자의 행정착오로 ‘기타사용료’로 입력해야 할 2020년 2월분 주차요금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른 것으로,
 - 부설 주차장 수입금의 경우 2019년까지는 사업수입(주차요금 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의회 결산검사 지적에 따라 2020년부터는 기타사용료(부설 주차장 수입)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담당자가 이를 간과했기 때문임.
 -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비목의 설정에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기타이자수입’은 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32만원을 징수 결정하였는데 기타이자수입은 기관명의 통장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이 예견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14~17)

- 기술심사담당관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전년(578만원) 대비 66만원 증가한 644만원이며, 전액 지난연도 수입으로,
 - 이는 폐업과 부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과년도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13건으로, 체납사유를 살펴보면 경영악화 12건, 납세태만 1건으로 파악됨.
 - 과년도 체납금액 13건 중 체납정리 노력에 의해 9건(436만원)의 체납금은 징수하였으나, 나머지 4건(208만원)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바([표9]참조), 나머지 체납금 또한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기울여 과년도 체납금들이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9]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과태료 체납 현황

(단위 : 원)

연번	법인명	과세년월	본세	증가산금	합계	비고
1	A업체	2018-04	375,000	146,250	521,250	체납 (자동차 압류)
2		2018-04	375,000	146,250	521,250	체납 (자동차 압류)
3		2018-04	375,000	146,250	521,250	체납 (자동차 압류)
4		2018-04	375,000	146,250	521,250	체납 (자동차 압류)
	소계	4건	1,500,000	585,000	2,085,000	
5	B업체	2018-04	375,000	146,250	521,250	2021-05-20 납부
6		2018-04	225,000	87,750	312,750	
7		2018-04	375,000	146,250	521,250	
8		2018-04	375,000	146,250	521,250	
9		2018-04	375,000	146,250	521,250	
10		2018-04	375,000	146,250	521,250	
11		2018-04	375,000	146,250	521,250	
12		2018-04	225,000	87,750	312,750	
	소계	8건	2,700,000	1,053,000	3,753,000	
13	C업체	2016-12	375,000	230,250	605,250	2021-02-16 납부
	소계	1건	375,000	230,250	605,250	
	합계	13건	4,575,000	1,868,250	6,443,250	

○ 다음으로, 품질시험소의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36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요금수입인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30만원, 수도권계량기 검정수수료 미납금액인 그외수입 미수납액 6만원으로,

- 이 중 주차요금수입 미수납액 30만원은 2명의 민원처리 담당자가 1월분의 부설주차장 수입금을 중복으로 각각 등록하여 발생한 것임.

- 동 사안은 담당부서원들 간의 업무 연계 미숙에 기인한다 할 것인바, 평상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연계업무에 대한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춰야 할 것임.
- 참고로, 이중 부과된 부설 주차장 수입금 1월분 30만원은 전액 감액하여('21.1.19),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에 전산처리를 완료함.

[표 10] 이중 부과 주차요금 발생에 따른 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세입목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가산금	계	조치사항	
					일 자	사항
부설 주차장 수입금 (기타사용료)	'20.1.31	265,800	0	265,800	'20.1.31	납부완료
	'20.1.31	265,800	34,600	300,440	'21.1.19	감액조치 완료

- 그외수입의 미수납액 6만원의 경우는 수도계량기 검정 후 부과된 수수료를 납부기관인 수도사업소의 담당자가 인수인계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으로 수납기관인 품질시험소가 진단하고 있으나,
- 수납기관인 품질시험소가 미수납금액에 대한 납부여부 확인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품질시험소 역시 업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한편, 미수납액 6만원은 금년 2월 2일과 2월 9일 중부수도사업소와 서부수도사업소가 납부완료 한 것으로 확인됨.

라) 환급액 (결산서 p.14)

[표11] 과오납반환액 내역 및 사유

(단위: 천원)

편성목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사유
기술심사담당관						
과태료	35,200	40,065	48,130	8,065	40,064	○ 위반업체 기관통보 건수 증가

○ 환급액은 ‘과태료’ 수납액 4,813만원 중 환급한 807만원으로, 이는 과태료 부과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정제척기간(5년) 초과로 인해 해당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전액 환급한 것임.

-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2009년 10월 동해그랜드호텔(강원도 원주시)공사 준공 당시 해당업체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미제출⁶⁾한 건에 대해 2019년 7월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게 과태료 부과⁷⁾처분을 요청⁸⁾한 것으로 기술심사담당관은 이에 대한 과태료(8백만원 + 이자7만원)를 부과⁹⁾하여 수납하였으나,

6)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생략)

3. 제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8)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2158호(2019.07.04.)

9) 기술심사담당관-669호(2020.1.10.)

- 본 과태료는 5년이 경과하여 질서위반행위가 완성된 날로부터 제척기간이 초과¹⁰⁾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음을 인지¹¹⁾한 기술심사담당관이 수납된 해당 과태료 전액을 해당업체로부터 환급¹²⁾한 것임.
- 이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을 검토하지 않은채 관성적으로 행정처리를 한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1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과태료 부과외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1) 법무부 유권해석결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6082)

12) 기술심사담당관-11826호(2020.7.5.)

2) 세 출 결 산

■ 기술심사담당관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918,097	-	-	-	-	-	918,097	812,480	-	105,617 (11.5%)
2019	754,388	-	-	-	-	-	754,388	567,670	-	186,718 (24.8%)
2018	683,882	5,300	-	-	-	-	689,182	627,388	-	61,794 (8.9%)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9억 1,810만원으로 이 중 88.5%인 8억 1,248만원을 지출하고 11.5%인 1억 562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4~25)

- 기술심사담당관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9억 1,810만원 대비 11.5%인 1억 562만원으로 작년 대비 13.3%p 감소(24.8%→11.5%)하였음.

[표 12]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379,146	11,124	2.9
2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50,150	19,098	38.1
3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	15,310	6	3.9
4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95,000	13,006	13.7
5	계약금액조정 검증 프로그램 유지관리	36,378	4,375	12.0
6	대심도 지하개발에 따른 영향 연구	180,000	18,300	10.2
7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35,870	17,168	47.9
8	기본경비	126,243	22,540	17.9
	합 계	918,097	105,617	11.5

- 먼저, ‘건설기술향상교육 및 기술정보제공’ 사업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 예산현액 5,015만원 대비 38.1%인 1,91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불용사유는 기술직 공무원 기술향상을 위한 대면 직장교육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확산 방지 차원에서 직장교육을 미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임.
 - 동 사업은 대면교육 외에 기술정보지 발간 및 설계변경 사례지 배포 등의 비대면 사업도 있으나, 강사를 초빙한 기술직공무원 직장교육과 건설기술향상 워크숍 사업이 대표적인 대면교육에 해당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할 때, 부득이했다 할 것임. 다만, 향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한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초점을 맞춘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음으로,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동 사업은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반복 공종에 대해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500만원 중 8,200만원을 지출하고 13.7%인 1,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음.

[표 13] 최근3년간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연 도	예산액	재배정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부서
2018	95,000	92,955(97.8%)	88,262	92.9%	6개 기관, 7개 부서
2019	95,000	62,445(65.7%)	57,888	57.9%	8개 기관, 9개 부서
2020	95,000	88,163(92.8%)	81,995	82.0%	6개 기관, 10개 부서

- 총 23건의 사업에 8,816만원을 배정해 8,200만원을 지출하여 4억 6,318만원의 사업시행효과를 얻었는데([표 14]참조) 동 사업은 투입 예산에 비해 사업효과가 상당히 크고,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면밀한 수요조사 및 지속적인 사업 관리 등의 노력을 통해 불용율을 저감을 제고해야 할 것임.

[표 14]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사업의 효과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부서)	사업명	배정금액	집행금액	사업시행효과
	계		88,163	81,995	463,185
1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남산골한옥마을 전통정원 시설물정비	4,110	3,900	4,620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외1건	8,865	8,510	29,568
3	서울시립대학교 (시설과)	교내 시설물 유지보수 및 소규모 개선공사	13,790	13,756	42,948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기획과)	잠실야구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12,805	11,505	15,400
5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노후시설 재정비 외 3건	12,001	11,397	30,800
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경의선숲길공원 수목보식 공사	4,318	4,090	1,848
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월드컵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 외 2건	12,641	10,166	12,320
8	성동구 (공원녹지과)	근교산 등산로 정비사업 외 1건	2,371	2,371	7,119
9	성동구 (치수과)	옥수동 306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	2,520	2,500	27,104
10	중랑구 (치수과)	상봉터마널 주변 하수관로 개량 외 6건	14,742	13,800	291,458

- ‘대심도 지하개발에 따른 영향 연구’ 사업은 대심도 터널 건설사업에 따른 동공·침하·진동 등의 안전 불안 요소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개발에 따른 다각도의 영향을 연구하는 사업으로,
 -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10.2%인 1,83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입찰시 발생한 낙찰차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 ‘설계경제성 심사제 활성화 및 운영’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기 전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설계의 경제성(VE) 및 시설물의 안전, 공사시행의 적정성, 신기술·신공법 적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공기의 단축과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예산 현액 3,587만원 중 47.9%인 1,717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본 사업의 경우 최초 예산편성은 재무국 계약심사과에서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¹³⁾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이관 방침¹⁴⁾에 기술심사담당관으로 해당 업무가 이관되어 2020년 4월 1일 조직담당관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¹⁵⁾과 함께 해당 예산이 이체되었음.
 -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업무가 2019년 12월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 2020년 1월부터 해당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예산은 2020년 4월에서야 이체됨으로써 이체 전 3개월분에 대한 운영예산을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예산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3개월분의 차액이 지출잔액으로 발생한 것임.

13)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자문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둔다. (2019.12.31. 개정)

1. ~ 4. (생략)

5. 제3조제3항제1호의 사항 : 설계경제성검토소위원회

14)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1호, `19. 12. 19. (기술심사담당관)

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③ 기술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략)

24. 설계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이는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이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함에 기인하는바, 업무이관 시에는 관련 당사자는 물론 회계처리 관련 부서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러한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참고로, 2021년도 예산서에는 설계경제성검토위원회 운영 예산을 건설기술심의회 운영예산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 ‘기본경비’는 해당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예산현액 1억 2,624만원 중 1억 370만원을 지출하고 17.9%인 2,254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주된 불용사유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현장방문 출장 자제로 인해 발생한 국내여비 지출 잔액 2,074만원에 해당하며,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부득이했다 사료됨.

다) 예산이용 · 전용 · 이체 · 변경 사용

- 예산의 이용 · 이체 · 변경사용은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마) 명시이월

○ 명시이월 없음.

바)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품질시험소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1,514,611				18,000		1,514,611	1,340,771		173,840 (11.5%)
2019	1,712,531	12,430	56,621	7,197			1,781,582	1,546,747		234,834 (13.1%)
2018	1,385,919			13,200			1,385,919	1,270,964	12,430	102,525 (7.4%)

가) 개 요

- 예산현액은 예산액 15억 1,461만원이고, 예산전용은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건설자재품질 시험 사업의 시험연구비로 1,800만원을 전용사용 하였으며, 예산대비 지출액은 88.5%인 13억 4,077만원이고 11.5%인 1억 7,384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6)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인 1억 7,384만원으로 전년(13.1%)에 비해 불용율이 다소 감소하였음.

[표 15]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건설자재 품질시험	414,760	36,816	8.9
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구입	480,133	51,748	10.8
3	품질시험소 청사 유지관리	237,063	29,958	12.6
4	기본경비	382,655	55,318	14.5
	합 계	1,514,611	173,840	11.5

- 품질시험소의 집행잔액 중 ‘건설자재 품질시험’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4억 1,476만원 대비 8.9%인 3,68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품질시험관리시스템 용역에 따른 낙찰차액 1,20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6개 항목에서 발생한 지출잔액 2,500만원등에 해당함.
 - 지출잔액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지출잔액 750만원은 코로나19확산 대응에 따른 워크숍, 집합교육 등의 미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750만원은 품질시험소 택시미터기 검사시설의 별관 부지 이전에 따른 시험장비 등의 유지보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 잔액임.
 -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750만원은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공감미 되나, 공공운영비의 지출잔액 750만원에 대해서는 품질시험소의 검사시설 이전공사가 예산 편성 전 당초에 계획¹⁶⁾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

안이라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 ‘품질시험소 청사유지관리’는 청사(본관, 별관)청결과 방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경상적 경비와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706만원 중 2억 711만원을 지출하고 12.6%인 2,996만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낙찰차액 450만원과 지출잔액 2,545만원임.
- 지출잔액의 주요 사유인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잔액 2,141만원은 2020년도 임금 협약체결 결과가 과년도 인상률 대비 낮은 비율(8.19%→3.53%)로 책정된 것에 따른 미집행 금액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표 16] 최근 5년간 촉탁계약직 임금인상률

(단위 : 원)

연도	기준호봉	전년도 월급여	현년도 월급여	인상률(%)
2020	5호봉	2,062,200	2,135,040	3.53
2019	4호봉	1,875,410	2,029,180	8.19
2018	3호봉	1,704,130	1,842,610	8.13
2017	2호봉	1,623,430	1,685,110	3.80
2016	1호봉	1,557,670	1,604,410	3.00

- ‘기본경비’의 경우 예산현액 3억 8,265만원 대비 14.5%인 5,532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대면출장 자제에 따른 국내여비 지출잔액 2,647만원

과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1,991만원에 해당함.

다) 예산의 전용

- 품질시험소의 예산전용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1건으로, 자재의 화학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이 인체 유해화학물질로 판명되어 대체시약에 소요되는 추가 금액을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에서 부족분 1,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표 17] 예산전용 내역

(단위: 만원)

예산과목				예산 편성액	변경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	건설공사 품질관리 사업 (일반회계)	건설자재 품질시험	시험연구비 (207-03)	3,342	1,800	-	5,142
		시험장비 및 행정장비 구입	자산물품취득비 (405-01)	49,813	-	1,800	48,013

- 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월 14일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아스콘 시험약품인 삼염화에틸렌(트리클로로에틸렌, 분류번호 79-01-6)이 발암 유해화학물질로 통보17)되어, 해당 약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바, 대체약품인 1-브로모프로판으로 변경하는 것에 따른 대체약품 증가비(5백만원→2,300백만원 : 4.6배)를 충당한 것임.

- 이는 품질시험소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1급 발암물질인 삼염

17) 감사담당관-840호 (2020.1.13.)

화에틸렌을 구매 사용하기 전(2019.5.27.),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¹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에 대한 운영여부 및 검사결과 제출¹⁹⁾, 주 1회 취급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미실시²⁰⁾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²¹⁾하여 발생한 것으로,

- 향후 품질시험을 위한 약품구매 및 취급에 있어, 「화학물질관리법」에 근거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담당자 교육 및 유해화학물질 구매 사전절차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차후 유사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 18)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9)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 21)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표 18] 아스콘 시험시약 가격 비교

(단위 : 원)

약품명	가격(개당)	총액	비고
삼염화에틸렌	47,000(17 ℓ)	5,000,000	106통(1,802 ℓ)
1-브로모프로판	195,000(15.4 ℓ)	23,000,000	117통(1,802 ℓ)

※ 연간사용액(1,802 ℓ)기준으로 1,800백만원 증가

라)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바) 다음연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 없음

2) 세출결산

■ 품질시험소

세출결산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변경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불용율)
2020	1,970,973						1,970,973	1,680,687		290,286 (14.7%)
2019	-									
2018	-									

가) 개요

- 예산현액은 예산액 19억 7,097만원이고, 예산대비 지출액은 85.3%인 16억 8,069만원이고 14.7%인 2억 9,029만원이 불용되었음.

나) 집행잔액(결산서 p.27)

- 품질시험소의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19억 7,097만원 대비

14.7%인 2억 9,029만원인데, 이는 2020년도 신규사업인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사업을 위해 편성된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불용액임.

[표 19] 2020회계연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내역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율(%)
1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1,970,973	290,286	14.7
	합 계	1,970,973	290,286	14.7

- 품질시험소의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사업은 품질시험소 별관 부지를 활용한 양재 R&D 혁신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택시미터 및 수도계량기 검정시설을 본관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표 20]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사업 내용

시 설	(이전)전 규모	현 규모	이동위치	비 고
택시미터 주행 검정시설	16대	4대	(별관)검정시설 → (본관)전면 주차장	지상1층, 연면적 82㎡ 진입로 290㎡
수도계량기 검정시설	6대	5대	(별관)검정시설 → (본관)후면 주차장	지하1층 / 지상1층 연면적 268.82㎡

- 집행잔액 2억 9,029만원 중 낙찰차액은 2억 731만원, 지출잔액은 8,297만원으로 지출잔액 중 시설비 잔액 6,813만원은 준공검사 시 법정보험료 제경비 정산에 따른 감액 금액이며, 감리비 잔액 1,186만원은 당초 총 사업비(19억 9,400만원)기준으로 감리비를 2,399만원 계상하였으나, 공종별 분리발주로 인해 건

축·토목·기계에 대한 감리만 시행하고, 그 외 설비구매 및 전기·통신분야는 미시행함에 따른 지출잔액임.

- 법정보험료 제경비 정산²²⁾에 따른 지출 잔액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감리비 지출잔액(1,186만원)은 전기·통신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6층 이하 소규모 시설은 공사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 규정²³⁾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직원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2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2(보험료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23)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정보통신공사사업법 시행령」 제8조(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해야 하는 공사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로 한다.

1.~2. (생략)

3. 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도시철도·도로·방송·항만·항공·송유관·가스관·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재해예방 및 운용·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표 21] 품질시험소 검사시설 이전 설치공사 감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분 야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	계약심사 등 낙찰차액	집행잔액
합 계		10,400	13,589	1,734	11,855
건설,토목,기계, 소방공사	23,989	10,400	1,734	1,734	-
그외 예산 (설비구매 및 전기공사 등)		-	11,855	-	11,855

다)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의 변경

- 예산의 변경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내역 없음.

바) 다음연도 사고이월

- 사고이월 없음.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